



서울특별시 SH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개정사규 확정, 공포(집단에너지사업단내규, 경영계획 및 심사분석 규정, 인사규정, 임직원행동강령, 연구실적평가내규폐지 등 9건)

사규관리규정 제7조,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 개정(안)을 확정·공포합니다.

1. 개정사규 및 주요내용

연번	개정사규	주요내용
1	집단에너지사업단설치 및 관리규정시행내규	○ 직원의 직급별 직책 조정(조장신설) ○ 정원의 인력 운영근거 규정 신설 ○ 경력환산 적용비율, 직급대우 임용기준월 변경
2	경영계획 및 심사분석규정	○ 규정의 목적 변경(경영관리→경영성과 달성) ○ 중장기 경영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명확화 ○ 경영관련위원회 설치(경영계획 등 심의·자문)
3	연구직직원 인사관리시행내규	○ 연구직 직원의 평가 구성 ○ 평가결과를 재임용, 승진, 연봉결정 등 자료로 활용
4	연구직직원 연구실적평가내규(폐지)	○ 연구직직원연구실적평가내규를 폐지 ○ 관련내용을 연구직직원인사관리시행내규에 신설
5	인사규정	○ 비위면직 처리된 공직자 등의 공사로 (재)취업 제한 ○ 강등 및 정직 징계처분자에 대한 보수 삭감비율을 강화 ○ 일반비위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연장
6	인사규정시행내규	○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기한 및 서면심사 등 진술권 보장관련 절차규정 보완 신설 ○ 징계양정기준상 성희롱 외에 성추행, 성매매를 신설. ○ 음주운전관련 징계규정을 신설하고, 징계개별기준 개정.
7	임직원행동강령	○ 물품구매 강제금지 등 협력업체와의 부당한 거래관계 방지 ○ 재직 중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한 취업청탁 금지 명문화 ○ 고위직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규정 도입
8	공익신고처리내규	○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
9	감사규정	○ 감사인의 사적관계 사전고지 의무

- 2. 공 포 문 : 첨부참조
- 3. 공 포 일 : 최종결재권자 결재일
- 4. 시 행 일 : 공포한 날부터 시행

- 붙임 1. 공포문_집단에너지사업단설치및관리내규(내규제717호)
 2. 공포문_경영계획 및 심사분석규정(규정제626호)
 3. 공포문_연구직직원 인사관리시행내규(내규제718호)
 4. 공포문_연구직직원 연구실적평가내규 폐지(내규제719호)
 5. 공포문_인사규정(규정제627호)
 6. 공포문_인사규정시행내규(내규제720호)
 7. 공포문_임직원행동강령(규정제629호)
 8. 공포문_공익신고처리내규(내규제721호)
 9. 공포문_감사규정(규정제630호). 끝.

에 스 에 이 치 공 사 사 장

수신자 SH팀01~71, SH센터01~11

팀 원	김채원	파트장	김인중	법무팀장	강기연	경영지원처장	김광석
기획경영본부장	김우진	사장	11/24 변창흠				

협조자

시행 법무팀-3971 (2015.11.24) 접수 ()
 방참번호 사장 방참 제997호
 우 138-201 /
 전화 3410-7128 전송 3410-7131 / cw0131@i-sh.co.kr / 비공개(5)